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 5·6블록(가정동 541-14, 543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지상 47층, 총 10개동, 공동주택 1,789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 및 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이내)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① 청약예금 :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청약예치 기준금액)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 신청자
-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단위 : 세대)

구분	75A	75B	84A	84B	84C	84D	84E	합계	
철거주택 소유자	2(1)	2(1)	24(10)	-	4(2)	5(2)	5(2)	42(18)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등	1(1)	1(1)	12(5)	3(2)	7(3)	9(4)	4(2)	37(1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2(5)	2(1)	7(3)	9(4)	4(2)	34(15)	
중소기업 근로자	-	-	12(5)	2(1)	7(3)	9(4)	3(2)	33(15)	
장애인	인천	-	-	5(2)	1(1)	3(2)	5(2)	1(1)	15(8)
	경기도	-	-	4(2)	1(1)	2(1)	3(2)	1(1)	11(7)
	서울	-	-	2(1)	-	1(1)	1(1)	1(1)	5(4)
	계	-	-	11(5)	2(2)	6(4)	9(5)	3(3)	31(19)
소계	3(2)	3(2)	71(30)	9(6)	31(15)	41(19)	19(11)	177(85)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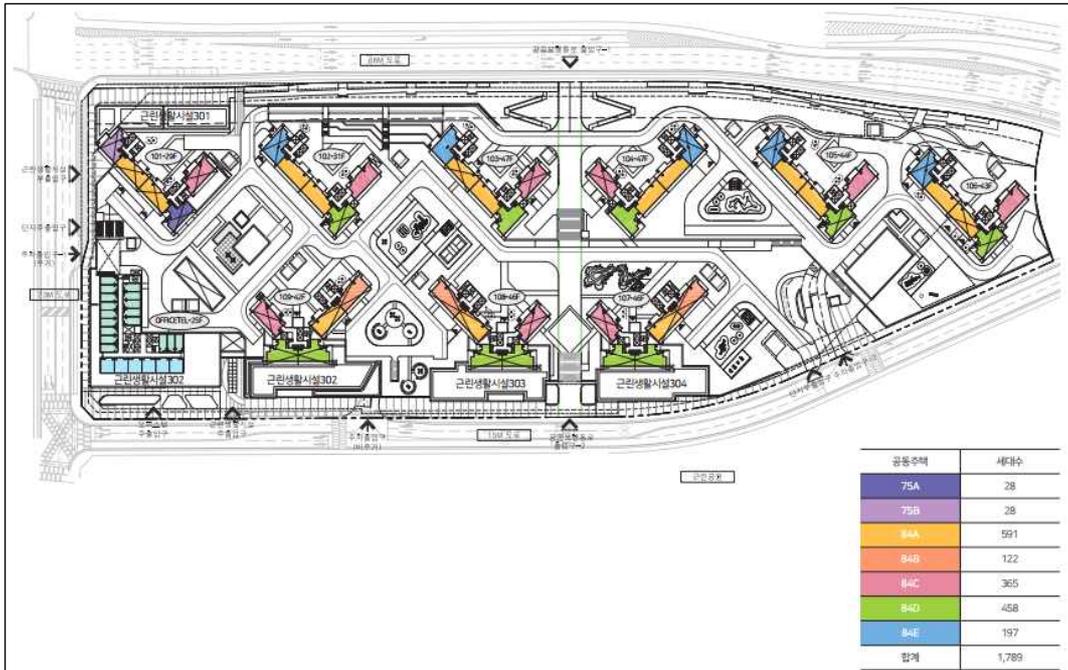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아파트 투유(www.ap2you.com)를 통해 인터넷 청약 방법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 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부적격처리 됨.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청약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함.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 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조감도



※ 위 조감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로 실제 건설되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 위 단지배치도는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도면 기준이며, 향후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진에 따라 세부사항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지배치도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팸플릿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입지도



※ 위 광역입지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은 교육청 등 관할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광역입지도에 표현된 현황, 개발 계획, 예정사항 등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해당관청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지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확장형)

<p>75m<sup>2</sup> A형</p>	<p>75m<sup>2</sup> B형</p>
<p>84m<sup>2</sup> A형</p>	<p>84m<sup>2</sup> B형</p>
<p>84m<sup>2</sup> C형</p>	<p>84m<sup>2</sup> D형</p>
<p>84m<sup>2</sup> E형</p>	

※ 위 평면도는 현재 마감재 등 세부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면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팜플렛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